

단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.)의 건학이념을 강화하고 학문의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단과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본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대학을 설치하고, 학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.

1. 신학대학
2. 인문대학
3. 사회과학대학
4. 사범대학
5. 공과대학
6. 예술대학

제3조 (기능과 업무) 각 대학은 대학본부의 재정 및 학사행정의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는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대학의 제반업무를 통할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의 적극적인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학칙변경에 관한 건의사항
3. 당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건의사항
4. 당해 대학의 학생지도와 표창 및 징계심의에 관한 건의사항
5. 학부(과)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
6. 기타 부의 사항

제4조 (학장회의) ① 학교발전 및 학사운영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학장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학장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 (운영위원회) ① 대학장은 위원장이 되고 학부(과)장은 위원이 된다.

제6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단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6-23-1)

제7조 (보고) 대학장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,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협조를 받아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제8조 (세부운영사항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